

법률상담 사례(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거 1987. 9. 1. 발족되어 현재 공단본부(서울특별시)와 11개 지부(직할시, 도단위) 및 38개 출장소(시, 군, 구단위)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구제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는 여러계층의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소송전구조,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여러가지 법적지원 활동을 통하여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오고 있다. 다만, 현재 공단은 법률상담과는 달리 법률구조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개인간의 민사문제에 한정하여 취급하고 있으며,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 형사문제 등에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공단이 발족한 이후 1992. 6. 30. 현재까지 4년 10개월 동안에 처리한 실적은 소송구조가 21,098건, 소송전구조가 78,574건, 그리고 법률상담이 1,193,232건에 이르고 있다. 법률상담은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대상자의 제한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단 본부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의뢰하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문의하더라도 친절히 답해 준다.

상담한 결과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화해·조정,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를 하여 준다. 참고로 상담시간은 오전 10:00 - 12:00, 오후 13:00-17:00(18:00)이며, 공단 본부에서는 휴일 및 야간에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 각 구청을 순회하는 이동법률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휴일 상담시간은 오전 10:00-오후 15:00이며 야간 상담시간은 오후 17:00-19:00(20:00)이다.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률구조는 법률상담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① 농·어민, ② 월평균수입 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③ 6급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④ 국가보훈 대상자, ⑤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⑥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 등이며,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뢰자)은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청구사실(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법률구조신청서(공단 소정 양식)와 함께 해당지역 공단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송을 하는 경우의 비용문제는 법률상담이나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구조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은 소송종료 후 공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및 그 사건의 승소가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해 산출한 변호사 비용을 의뢰자로 부터 상환받고 있다. 그런데 승소한 의뢰자는 법원의 소송비용확정 결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분할 상환토록 하거나 또는 상환을 면제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의뢰자의 비용부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571-7801 (대표)) 따라서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화자동법률상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동철)에서는 법을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조의 일환으로 무료법률상담, 야간 및 휴일법률상담, 이동법률상담을 실시하는데 이어 한국통신의 협력을 받아 '93. 4. 21부터 전화자동법률상담을 개통중이며 '93. 5. 1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용전화: 700-2080(전국동일)이며, 서비스 제공지역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광명, 과천, 부천, 시흥, 공주, 전주, 군산, 이리, 남원, 김제, 정주, 나주, 영천, 경산, 울산, 밀양, 김해시 등 23개 시이며 나머지 시군도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법률상담 사례 조기화면 >

법률상담 사례 (LQA)	대한법률구조공단(02-571-7801)
[민사 분야]	[상사 분야]
1. 민사일반	21. 상사일반
2. 물권관계	22. 회사관계
3. 채권일반	23. 어음/수표관계
4. 계약 및 불법행위	24. 보험관계
5. 주택임대차보호법관계	
6. 근로관계	[행정 분야]
7. 가족법관계	31. 행정일반
8. 민사소송관계	32. 세법관계
[형사 분야]	[소송판결사례]
11. 형법관계	41. 소송판결사례
12. 형사소송관계	
[이용안내/소식]	
51. 법률구조공단 이용안내/소식 [0 / 8]	

주제별 데이터베이스

■ 민사분야

▶ 민사일반 분야

<민사분야 1. 민사일반>

민사일반	현재시각: 95/05/19 14:56:05	자료량 : 10 건
번호 제 목		
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2	부동산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8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	
9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 민사분야 1. 민사일반 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

제목 :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 질문 >>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1990년 10월 15일 방과후 학교 앞에서 봉고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책을 파는 책장사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불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는 바, 저는 그 책이 불필요한 책이어서 즉시 반환하기 위하여 찾아가 보았지만

< 중간생략 >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 가라고 통지를 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대금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답변 >>

부동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및 제146조).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곧 계약은 취소되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이하 생략 >

< 민사분야 2. 물권관계 1.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제목 :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질문 >>

(1) 대한민국 국적보유 당시에 취득한 부동산의 권리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2) 대한민국 국민이던 자가 국내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와 국내 거주자가 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대한민국 국적 보유당시에 취득한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를 국적상실 (국적법 제12조)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간내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허가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때 또는 허가신청이나 신고자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는 1년(상속으로 인한 취득인 경우 3년) 이내에 내국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이하생략 >

▶ 물권관계

< 민사분야 2. 물권관계 >

물권관계 현재시각: 95/05/19 14:56:24 자료량 :25 건
번호 제 목

- 1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2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방법
- 3 소유권 방해 배제청구권의 행사
- 14 주위토지통행권

▶ 채권일반

< 민사분야 3. 채권일반 >

채권일반 현재시각: 95/05/19 14:56:50 자료량 :14 건
번호 제 목

- 1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 확보 방법
- 2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 8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
- 9 신원보증책임의 성질 및 책임범위

〈민사분야 3. 채권분야 1.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 확보방법〉

제목 :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 확보 방법

〈 질문 〉

저는 수산업을 하는 자로서 사업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얼마전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

친분상 돈을 빌려 주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는지요?

〈 답변 〉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밟고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하생략 〉

▶ 계약 및 불법행위

〈 민사분야 4. 계약 및 불법행위 〉

계약 및 불법행위 현재시각: 95/05/19 14:56:50 자료량 : 14 건
번호 제 목

1 가옥 구입시 주의할 점

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

7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제

8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지체에 대한 실권약관의 효력

〈 민사분야 4. 계약 및 불법행위 1. 가옥 구입시 주의할 점 〉

제목 : 가옥 구입시 주의할 점

〈 질문 〉

저는 직장생활 10여년 만에 가옥 한 채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매입하려고 하나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으니 절차 및 주의할 점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변 〉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해당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열람하여 보고 현장과 대장을 비교하여야 하고,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 인지도 파악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 중간생략 〉

그리고 재산세 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류 등을 받아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관계

〈 민사분야 5. 주택임대차보호법관계 〉

주택임대차보호법관계 현재시각: 95/05/19 14:57:31 자료량 : 17 건
번호 제 목

1 점포가 딸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2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증액 한도

11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

12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묵시의 갱신

〈 민사일반 5. 계약 및 불법행위 1. 점포가 딸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

제목 : 점포가 딸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 질문 〉

저는 전세금 1,500만원에 조그마한 방이 딸린 점포를 임차하여 1990년 3월 12일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서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1990.4.25)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 이하생략 〉

《 답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1987.4.28. 선고, 86다카2407 판결)는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하생략 〉

▶ 근로관계

〈 민사분야 6. 근로관계 〉

근로관계 현재시각: 95/05/19 14:57:54 자료량 :18 건
번호 제 목

- 1 임금청구
- 2 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보전처분의 필요성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산재보상금 수령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능여부
- 13 소송종료후 집행전 산재보험금 청구 가능여부

〈 민사분야 6. 근로관계 1. 임금청구 〉

제목 : 임금청구

《 질문 》

저는 1987년 11월경 약 15명 정도의 종업원을 둔 '갑'이 경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근무했던 바, 임금 6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청을 한즉, 노동부에서는 저와 '갑'을 불러 '갑'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지만 그 후에도 '갑'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노동부에서는 '갑'을 고발조치 하였다고 하며 저에게는 임금을 따로이 민사적으로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답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5인 이상의 작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두어 이를 감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이러한 민사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업체가 이를 위반할 시 노동부에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민사적인 임금의 강제집행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독촉을 하고 또한 검찰에 고발이 있을 경우 당해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이하생략 〉

▶ 가족법 관계

〈 민사분야 7. 가족법 관계 〉

가족법관계 현재시각: 95/05/19 14:58:12 자료량 :30 건
번호 제 목

- 1 동성동본간의 혼인가능 여부
- 2 형부와 처제간에 결혼할 수 있는가
- 3 .
- 4 .
- 5 .
- 6 .
- 7 .
- 8 .
- 9 가출과 이혼의 성부
- 10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아내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절차

〈 민사분야 7. 가족법 관계 1. 동성동본간의 혼인가능 여부 〉

제목 : 동성동본간의 혼인가능 여부

《 질문 》

저는 28세된 남자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7년전에 서울로 와서 갖은 고생끝에 이젠 어느정도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결혼할 나이도 되어서 작년부터 옆집에 사는 처녀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는 횟수가 거듭되면서 그녀와 저는 결혼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성과 저의 성이 똑같은 김해 김씨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김씨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까지 같은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 서로의 불찰이었습니다.

< 이하생략 >

<< 답변 >>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생긴 이유를 보면, 옛날에는 인구가 적어서 한 마을에 사는 동성자는 거의 근친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이유와 우생학적인 입장에서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의 이동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게 되었고, 지나치게 넓은 범위까지 금혼을 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인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성동본간의 혼인은 불가능합니다.

< 이하생략 >

▶ 민사소송관계

< 민사일반 8. 민사소송관계 >

민사소송관계 현재시각: 95/05/19 15:02:16 자료량 :36 건
번호 제 목

- 1 민사소송의 관할
-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
- 13 사망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 14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

< 민사일반 8. 민사소송관계 1. 민사소송의 관할 >

제목 : 민사소송의 관할

<< 질문 >>

저는 몇년전 서울에서 살았을 당시 이웃에 살던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소송이라도 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송을 '갑'의 주소지인 서울에 소재한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가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의 주소지인 부산에서 소송을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 >>

민사소송법 제1조의 2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고, 제2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지'가 또한 이른바 특별재판적으로서 인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조).
이와같이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64. 7. 24. 선고, 64마555 판결).

< 이하생략 >

■ 형사분야

▶ 형법관계

< 형사분야 11. 형법관계 >

형법관계 현재시각: 95/05/19 15:02:37 자료량 :37 건
번호 제 목

-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동시성립 여부
- 2 교사 처벌의 한계
- 13 존속상해죄의 성부
- 14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치사

< 형사분야 11. 형법관계 2. 교사 처벌의 한계 >

제목 : 교사 처벌의 한계

<< 질문 >>

저는 중학교 교사인데 담배를 피운 학생을 붙잡아 훈계하기 위해 뺨을 몇차례 때렸더니 불행하게도 고막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이경우 저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교육법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으며(동법 제76조), 한편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한다(동법 제75조 제1항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른바 상당한 행위로서 법률상 허용되며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하생략 >

▶ 형사소송관계

< 형사분야 12. 형사소송관계 >

형사소송관계 현재시각: 95/05/19 15:03:00 자료량 :23 건
번호 제목

- 1 형사고소의 처리기간
- 2 합의서 작성과 고소의 취소

- 13 항소제기의 절차
- 14 준기소 절차

< 형사분야 12. 형사소송관계 1. 형사고소의 처리기간 >

제목 : 형사고소의 처리기간

<< 질문 >>

저는 '갑'을 상대로 1990년 3월경 형사고소를 하여 9개월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지금까지도 아직 조사중이라고 하면서 '갑'을 처벌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몇번이나 진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이를 처리하여야 할 기간은 없지요? 언제까지 이를 기다려야 하는지요?

<< 답변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그리고 사법경찰관(경찰서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제39조에 따라 2개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예외 : 재판상의 준기소 절차 및 즉결심판).

< 이하생략 >

■ 상사분야

▶ 상사일반

< 상사분야 21. 상사일반 >

상사일반 현재시각: 95/05/19 15:04:09 자료량 :7 건
번호 제목

- 1 상업사용인과 표현대리
- 2 사업목적의 금전차용과 남편의 연대책임

- 6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
- 7 공중 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상사분야 1. 상사일반 1. 상업사용인과 표현대리 >

제목 : 상업사용인과 표현대리

<< 질문 >>

'갑'은 부산북구 감전동에서 철봉등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인 바, 여러명의 위무원을 고용하여 매월 기본급으로 10만원의 봉급을 주고, 그 밖에 위무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고에 대하여 3%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업계의 관례입니다. 저는 '갑'의 고용인 '을'을 통하여 3년동안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왔습니다.

< 이하생략 >

<< 답변 >>

'갑'은 자신이 고용한 '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16조 제1항) '을'은 철봉의 판매에 관한 한 '갑'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경우 '을'이 해고되기 전에 철봉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문제이고 해고된 후에 철봉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미 '을'에게 상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대리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하생략 >

▶ 회사관계

〈 상사분야 22. 회사관계 〉

회사관계 현재시각: 95/05/19 15:04:34 자료량 : 5 건
번호 제 목

- 1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자가 그중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 2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상사분야 22. 회사관계 1.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제목 :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질문 〉

저는 1991년경 '갑'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갑'에게 돈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갑'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받았습니. 그 후 '갑'이 돈을 갚지 아니하여 알아본 결과 위 회사는 '갑'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뿐 더이상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이하생략 〉

〈 답변 〉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7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적인 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하생략 〉

▶ 어음/수표관계

〈 상사분야 23. 어음/수표관계 〉

어음/수표관계 현재시각: 95/05/19 15:05:04 자료량 : 23 건
번호 제 목

- 1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 2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
- 13 원인채권과 어음이 소멸시효에 걸린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가능여부
- 14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 상사분야 23. 어음/수표관계 1.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

제목 :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 질문 〉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도장을 찍지 아니하고 서명을 하거나 무인을 찍어도 되는지요?

〈 답변 〉

우리 어음법상 어음행위는 기명날인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음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발행을 비롯하여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는 반드시 기명날인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이하생략 〉

▶ 보험관계

〈 상사분야 24. 보험관계 〉

보험관계 현재시각: 95/05/19 15:05:25 자료량 : 4 건
번호 제 목

- 1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란
- 2 보통보험 약관의 내용과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 상사분야 24. 보험관계 1.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란 〉

제목 :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란

〈 질문 〉

저는 3년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맹장수술도중 수술이 잘못되어 현재 재수술 후 입원 치료 중인데 이 경우 상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 특히 보험사고성이 문제되는데 여기서의 상해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를 말합니다. < 이하생략 >

■ 행정분야

▶ 행정일반

〈 행정분야 1. 행정일반 〉

행정일반 현재시각: 95/05/19 15:05:47 자료량 :19 건
번호 제 목

-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2 검찰고소사건 재항고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 13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그 거부
- 14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 행정분야 1. 행정일반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제목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질문 〉

저는 '갑'이라는 자에게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여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바, 담당검사로부터 '갑'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 하였으나 다시 기각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이하생략 〉

〈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로 받았을 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해국민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68조 제1항 본문).

〈 이하생략 〉

▶ 세법관계

〈 행정분야 32. 세법관계 〉

세법관계 현재시각: 95/05/19 15:06:25 자료량 :8 건
번호 제 목

- 1 1세대 1주택의 범위
- 2 명의신탁과 취득세
- 7 가등기 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
- 8 저당권자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과의 우선관계

〈 행정분야 32. 세법관계 1.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목 : 1세대 1주택의 범위

〈 질문 〉

저는 주택 겸 간이점포로된 건물 1동을 소유한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거주하지는 않음) 이번에 개인사정상 이를 대지와 함께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지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총건평 25평으로 그중 주거용이 15평이 조금 넘고 점포는 10평에서 조금 미달되고 대지는 40평 가량됩니다.

《 답변 》

1988년 8월 25일자로 개정된 소속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있어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하생략 〉

원고를 모집합니다.

「DATABASE」의 세계로-

「데이터이스월드」는 독자 여러분께 그 문을 활짝 열어 독자들이 공감하고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광장」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원고내용: ● 데이터베이스 관련 연구논문
 - DBMS신기술
 - 데이터베이스서비스
 - 데이터베이스산업정책 및 정보표준화
 - 데이터베이스기술 동향
 - 데이터베이스법령 해설
 - CD-ROM 및 멀티미디어
 - 독자투고
 - DB진흥센터에 바란다
 -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 관련 등정보화사회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글
2. 분 량: 30매내외 (200자 원고지)
3. 마 감: 매달 10일
4. 보 낼 곳: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1번지 조선일보사 2층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조사홍보과 데이터베이스월드 담당자 앞
 (전화) (02)725-3751/3, (팩스) (02)725-3750
 E-MAIL: 이용자번호: DPCK(천리안, 하이텔, 나우콤), BZA00525(포스서브)
5. 기 타: ● 도착된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지급
 ● 원고 제출시 주소, 주민등록번호, 온라인번호, 약력, 사진1매등을 작성 제출 요망